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 2.19. 기획위원회

개정 2011. 7.27. 기획위원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리대학교의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처분·보상 등에 적용된다.

제3조(출원·등록 비용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의 국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은 발명기술평가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전담사무소의 평가를 거쳐 다음과 같이 등급에 따라 각각의 비율만큼 부담한다. 다만, 해외출원의 가부 및 지원범위는 외부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등급구분	국내		국외	
	산학협력단	교직원 등	산학협력단	교직원 등
A	100%	0%	70%	30%
B	80%	20%	50%	50%
C	50%	50%	25%	75%
D이하	30%	70%	15%	85%

② 산학협력단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출원 이후 당해 지식재산권의 개별국가 진입 시 그 개별국 지원액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한다.

③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의한 산학협력단 명의로 비용으로 출원·등록을 할 경우, 연간 국내5건, 해외 2건(PCT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교직원 등이 연구비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연구계획서 비목별예산(실행예산)편성 시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을 경우 이를 비목별예산(실행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비목별예산(실행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에도 계상하지 않을 시에는 최소등급에 준하여 지원한다.

⑤ 등록거절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모든 소송제기에 대한 법적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그 총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4조(출원·등록 비용 계상기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시 수가표(별지서식 제2호)에 의거 각 지식재산권의 취득수가의 상한액에 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식재산권의 취득수가의 상한액에 준한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발명자와 지식재산권담당부서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양도비용의 부담) 교직원 등이 개인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는 전담사무소의 발명평가를 통해 B등급 이상일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특허를 양수하고, 그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외부수탁연구의 경우 당해 연구과제의 협약서 및 지침상에서 산학협력단 소유의무를 정하고 있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등록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등록 후 최초 5년간,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 지식재산권은 양수 후 2년간 그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발명자의 소견서(별지 서식 제3호)를 접수하고 발명평가기준표를 활용한 외부기관 평가를 거쳐 B등급 이상은 유지하고, 그 이하 등급은 발명자의 동의를 구하여 공개 및 외부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발명자가 희망할 시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이 실시 중에 있거나 처분한 지식재산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등록유지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지식재산권비용의 관리) 외부연구비에서 계상된 지식재산권비용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2년까지 해당 외부기관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며 최종 보고 후 잔액은 다른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외부기관의 시행규정 및 협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실시료 보상)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의 직무발명의 실시하여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지식재산권취득 총비용 및 소송비용,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 본 건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각각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순수익)을 각 발명자 또는 발명자의 대표가 지정하는 기관에 보상할 수 있다.

② 기술의 실시 및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액은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27>

기술이전 순수입액	발명자 보상	기여자 보상	산학협력단
전체동일	70%	5%	25%

제9조(외부수탁과제의 실시료 보상) 외부수탁기관의 지원에 의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처분으로 인한 실시료 보상은 외부수탁기관과의 협약서 및 관련규정에 실시료 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시료 보상을 하고, 그 외 실시료 보상은 제8조를 준용한다.

부칙(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등록 비용의 부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시행된 과제를 통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비용은 우리대학교 직무발명보상규정(개정 2005. 9.13 교무위원회)에 의한다.

부칙(2011.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발 명 기 술 평 가 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직무발명여부	직무발명여부	발명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판단	
특허성	권리 등록가능성	발명기술이 특허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권리 저촉가능성	발명기술의 내용 또는 그 핵심이 관련 선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저촉여부 및 저촉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 평가	
기술성 (×2)	R&D 부합성	발명기술이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평가	
	발명기술의 구성	종래기술에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평가	
	경쟁성	종래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장점(현저한 이점)또는 실질적인 경쟁상의 이점이 있는가를 평가	
	증명용이성	발명기술의 이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용이하게 증명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	
	기술수명	기술발전 속도와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발명기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평가	
시장성 (×2)	적용범위	발명기술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발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시장을 파악하여 발명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	
	수요성	기술제품 시장에서 발명기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지 또는 관련 기술수요가 파악되어 있는지를 평가	
	잠재성장성	발명기술이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의 존재 여부 및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상용화가능시기	발명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시장 진입성	발명기술 관련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벽을 포함한 시장지입 장벽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	

※ 직무발명여부, 특허성은 O, X 로 표기

※ 기술성, 시장성은 1~5점 중 숫자표기

합 계	
등 급	

1. 특허성

(1) 권리 등록가능성 ()

발명기술이 특허 권리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 (o) 동일한 선행기술이 없고, 유사 선행기술들과는 차이가 있어 특허 권리로 등록 가능하다.
- (x) 동일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여 특허 권리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2) 권리 저촉가능성 ()

발명기술의 내용 또는 그 핵심이 관련 선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저촉 여부 및 저촉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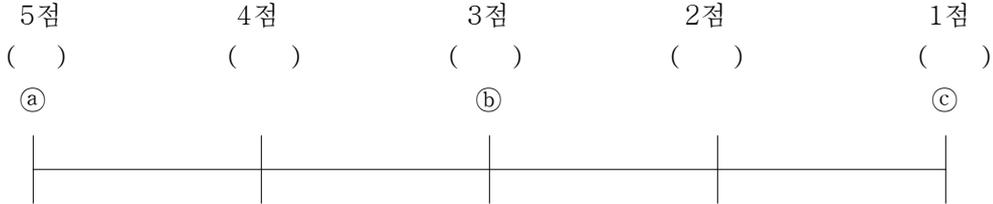
- (o) 발명기술을 실시하고자 할 때 선등록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다.
- (x) 발명기술을 실시하고자 할 때 선등록 특허에 저촉된다.

< 평가 의견 >

2. 기술성

(1) R&D 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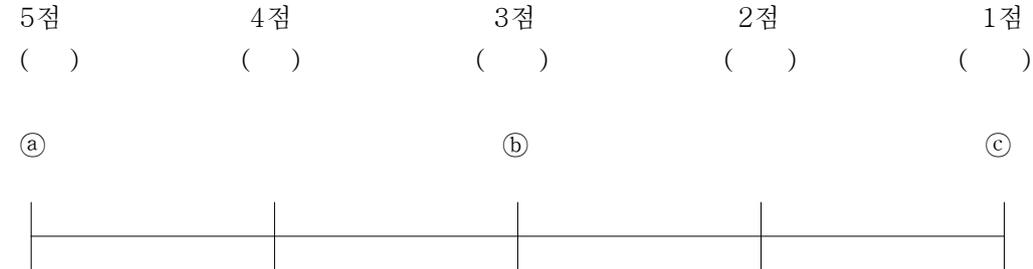
발명기술이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평가



- Ⓐ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상당부분 부합된다
- Ⓑ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부합의 정도가 보통이다
- Ⓒ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부합되지 않는다.

(2) 발명기술의 구성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어느 수준 인지에 대해 평가



- Ⓐ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기술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해결 정도가 큰 발명 기술이다.
- Ⓑ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가 보통인 발명기술 또는 종래기술의 문제해결 정도가 보통인 발명기술이다.
- Ⓒ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효과가 없는 발명기술이다.

(3) 경쟁성

종래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장점(현저한 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종래기술의 대체가
가능 여부 또는 실질적인 경쟁상의 이점이 있는가를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	()	()	()	()
Ⓐ		Ⓑ		Ⓒ

- Ⓐ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이 존재한다.
- Ⓑ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 이점에 다소의 부족함이 있다.
- Ⓒ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을 찾을 수 없다.

(4) 증명 용이성

발명기술의 이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	()	()	()	()
Ⓐ		Ⓑ		Ⓒ

- Ⓐ 발명기술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거나 그 활용의 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 발명기술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데 다소의 부족함이 있다.
- Ⓒ 발명기술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5) 기술 수명

기술발전 속도와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발명기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	()	()	()	()
Ⓐ		Ⓑ		Ⓒ

- Ⓐ 도입기 및 성장기 초기 기술로, 향후 활용 가능기간이 길다.
- Ⓑ 성장기 후기 및 성숙기의 기술로, 향후 활용 가능기간이 보통 수준이다.

㉔ 쇠퇴기의 기술로, 향후 활용 가능 기간이 짧다.

< 평가 의견 >

--

3. 시장성

(1) 적용범위

발명기술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발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및 시장을 파악하여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함.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hr/>				

- Ⓐ 복수의 시장 또는 산업분야에까지 적용 가능하다.
- Ⓑ 단일 시장분야의 여러 제품군 또는 제품으로 적용 가능하다.
- Ⓒ 복수 제품, 타 제품군, 타 기술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이 없다.

(2) 수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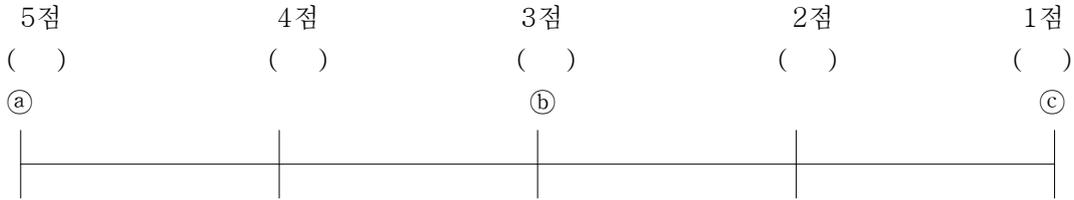
기술제품 시장에서 발명 기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지 또는 관련 기술수요가 파악되어 있는지를 평가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hr/>				

- Ⓐ 현재 발명기술수요에 대해 요구가 많으며 그 수요는 충족되어 있지 않다
- Ⓑ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
- Ⓒ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으나 파악되어 있지 않다.

(3) 잠재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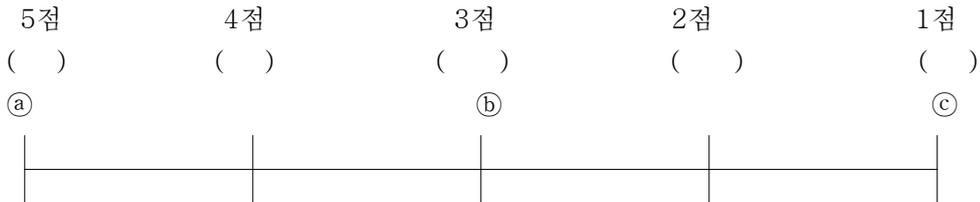
발명기술이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의 존재 여부 및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 Ⓐ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며, 그 잠재적 성장성도 크다
- Ⓑ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나 본 발명으로는 시장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 Ⓒ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틈새시장이 발생하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4) 상용화 가능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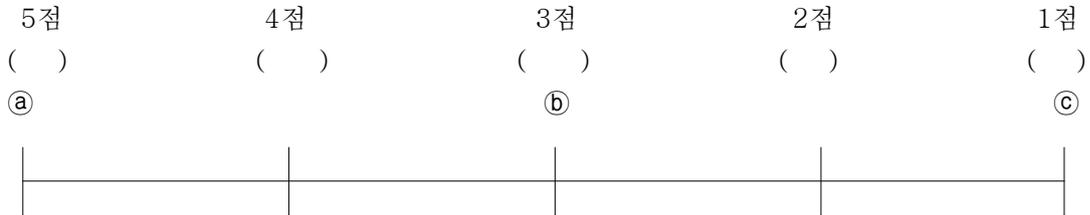
발명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 Ⓐ 향후2년 이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 Ⓑ 향후 10년 이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 Ⓒ 적용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5) 시장 진입성

발명기술 관련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벽을 포함한 시장진입 장벽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



- Ⓐ 진입장벽이 거의 없거나 또는 신규 시장인관계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 Ⓑ 다소간의 진입장벽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 평가 의견 >

※ 평가점수법

등 급	평 가 점 수
A	80~100
B	70~79
C	60~69
D	50~59
E	50미만

(별지서식 제2호)

1) 특허

(단위 : 원)

구분	분류	항목	수수료	비고
국내	출원비용	신규출원		
		1)기본	800,000	
		2)추가		
		- 독립항	100,000	
		- 종속항	50,000	
		- 면초과	5,000	독립항 1항, 명세서초과 20면 기준 1면초과당
		분할/변경출원	기본료의 1/2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200,000	기재불비시 미지급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70%)	중간사건비용제외(청구항 삭제대응시)
	기타절차비용	우선심사청구	300,000	
		선행기술조사	300,000	
		기타비용	100,000	출원인정보변경 출원인명의변경 권리이전 등록권리자정보변경 실시권설정 등
	거절불복심판 출원비용	심판청구시 해외출원	800,000	
해외		1)PCT출원		
		-국제단계	1,000,000	
		-국내단계(국가별)	1,000,000	개별국추가시 기본료 20% 할인적용
		2)개별국출원	1,000,000	
		병합/계속/분할출원	기본료의 1/2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3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	
	번역료	1)한글→영어	30,000	
	2)한글→일어	25,000		
	3)한글→기타	40,000		

※출원비용의 상한액(대리인비용, 관납료, 심사청구료 포함)은 특허 150만원, 실용신안 100만원, 디자인/상표 60만원임

※선행기술조사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준 / 선행기술조사 후 출원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비용지급

※병합출원시 추가비용 없음

※기재불비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의 경우 중간사건비용 지급없음

※청구항 삭제축소시 등록성사금은 출원료의 70%지급

② 실용신안

(단위 : 원)

구분	분류	항목	수수료	비고
국내	출원비용	신규출원		
		1)기본	600,000	
		2)추가		
		- 독립항	60,000	
		- 종속항	40,000	
		- 면초과	5,000	독립항 1항, 명세서초과 20면 기준 1면초과당
		분할/변경출원	기본료의 1/2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200,000	기재불비시 미지급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70%)	중간사건비용제외(청구항 삭제대응시)
	기타절차비용	우선심사청구	300,000	
		선행기술조사	300,000	
	기타비용	100,000	출원인정보변경 출원인명의변경 권리이전 등록권리자정보변경 실시권설정 등	
	거절불복심판	심판청구시	800,000	
해외	출원비용	해외출원		
		1)PCT출원		
		-국제단계	1,000,000	
		-국내단계(국가별)	1,000,000	개별국추가시 기본료 20% 할인적용
		2)개별국출원	1,000,000	
		병합/계속/분할출원	기본료의 1/2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2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	
	번역료	1)한글→영어	30,000	
		2)한글→일어	25,000	
3)한글→기타		40,000		

③ 디자인, 상표

구분	분류	항목	수수료	비고
국내 -디자인	출원비용	신규출원	3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	
-상표	출원비용	신규출원	200,000	
	류 추가		1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70%)	(청구항 삭제대응시)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150,000	
해외 -디자인	출원비용	신규출원	4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	
-상표	출원비용	신규출원	400,000	
	류 추가		100,000	
	등록비용	등록성사금	80%	
	중간사건비용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200,000	

※ 기타절차비용 및 거절불복심판 비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용과 동일

(별지서식 제3호)

지식재산권의 유지여부에 대한 소견서

소 속 :

발 명 자 : (인)

제출일자 : 년 월 일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출원일)	
3. 등록번호(등록일)	
4. 연차	
5. 지식재산권유지에 대한 소견 (유지, 말소 또는 발명자에게 반환의사 기재요망)	
5-1. 유지에 대한 사유 (예, 향후 기술이전 및 기술의 이용가능성, 시장성, 원천기술여부)	
5-2. 유지에 대한 사유 (현재관심을 보이는 기업의 유무 및 관심기업)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